

고 시

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17-113호

반포현대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시행인가 고시

우리구 반포현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조합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있어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28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, 같은 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7. 9. 21.

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

1.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

가. 정비사업의 종류 : 주택재건축정비사업

나. 정비사업의 명칭 : 반포현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

2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

가. 정비구역의 위치 :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30-16 일대

나. 정비구역의 면적 : 3,621.5㎡

3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
가. 사업시행자의 성명 : 반포현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
(조합장 이순복)

나. 사업시행자의 주소 : 서울시 서초구 사평대로 310-4, 관리사무소
(반포동, 반포현대아파트)

4.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: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50개월**5. 사업시행인가일 : 2017. 9. 19.****6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: 해당없음****7. 건축물의 대지면적·건폐율·용적률·높이·용도 등 건축계획에 관한사항**

가. 대지면적 : 3,614.7㎡ 나. 건 폐 율 : 29.09%

다. 용 적 률 : 298.01% 라. 최고높이 : 59.55m

마. 용 도 : 공동주택(아파트) 및 부대·복리시설

8. 주택의 규모 등 주택건설계획 : 지하2층/지상20층, 아파트 2개동, 108세대

공 급 구 분	주택의 형 태	세대수	주택규모별 세대수(전용면적 기준)			
			60㎡ 이하	60㎡ 초과 ~ 85㎡ 이하	85㎡ 초과 ~ 115㎡ 이하	115㎡ 초과
계	아파트	108	19	87	2	—
분 양	아파트	92	3	87	2	—
임 대 (재건축소형주택)	아파트	16	16	—	—	—

**9.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
및 토지 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**

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		새로이 설치할 정비기반시설			
종류	규모	종류	규모	시행자	비용부담자 및 부담내용
		도로	6.8㎡	반포현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	사업시행자인 조합이 전부설치하되, 「도정법」 제65조 규정에 따라 무상귀속

**10. 의제 처리사항 :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32조제1항 각
호의 해당 관계법규**

**11. 관계도서는 서초구청 주거개선과(☎ 02-2155-7342)에 비치
하고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**